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14602
----------	-------

제출연월일 : 2012. 2. 2.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
(안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7조)

1)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안 제3조)

1)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 2)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안 제11조 및 제12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3장제2절 및 제3절(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 1)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 2)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안 제4장제2절(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 1)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2)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5장제2절(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2)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및 연불판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 체결등”이라 한다)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거래 상대방을 말한다.

7.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를 말한다.
9. “구매권유”란 특정 금융소비를 상대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10.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의2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① 이 법에서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의 상품유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투자성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예금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대출성 상품: 「은행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제1항에 따른 상품유형의 판단 기준 및 세부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제2조제10호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종류를 정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장 제2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이하 “금융상품판매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금융 관련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 중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업종: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또는 금융상품자문업

2.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2. 등록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등록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협회(이하 “금융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협회

⑥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업무 단위 중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9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그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를 영위할 때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액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3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운용 실적에 따라 그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출성 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

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자산 및 소득수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보장 수요 등
2.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3.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비추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매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 수요 등

2.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확인한 사항에 비추어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성 상품의 내용

나. 위험보장을 위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전 및 권리
등

다. 위험보장의 범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성 상품의 내용

나. 투자에 따른 위험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금성 상품의 내용

나. 이자율, 수익률 및 중도해지수수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연계 또는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
반금융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
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발급 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구속성 금융상품계약 체결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성 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금융상품의 세부유형,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구매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구매권유를 계속하는 행위(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금융상품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협회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거부되거나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투자에 따른 위험
- 나.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거래조건
- 나.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거래조건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보장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부당하게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 수수료 등을 일할(日割)로 표시하거나 보험료, 수수료 등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 수수료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보전(補填)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예금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일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 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금융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계약서류의 발급의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0조(미등록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위탁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게시, 증표 제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금지행위 등)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판매업 간에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어느 금융상품판매업자와도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자문에 응한다는 사실
2.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

제25조(금융소비자 보호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금융소비자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 금융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금융소비자정책의 목표
4. 그 밖에 금융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금융소비자 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금융상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민원(이하 “금융민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발생 규모 및 처리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표 대상 금융민원의 내용 및 평가·공표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비교공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29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

는 그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6. 그 밖에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부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분쟁의 조정) ①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4조(조정의 효력) ① 양 당사자가 제31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당사자가 조정에 불복하여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

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서는 조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5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36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37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감독 및 처분

제1절 감독 및 조치

제3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

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원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우로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0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

매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0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원에 대해서는 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0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원장은 제2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원장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제45조(이의신청) ①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43조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39조,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과징금

제4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수입이 없거나 수입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경우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③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경우
3.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4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제4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53조(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5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또는 금융협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원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원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0조를 위반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위탁한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자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금융상품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경우
 - 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라.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18조제7항에 따른 광고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자(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한정한다)
 8.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광고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자(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한정한다)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③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6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9조를 적용할 때 제4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제1호·제2호,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위탁받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과의 관계 및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6조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5조(금융상품판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관한 인·허가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29조에 따른 조정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9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 밖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8조”를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

57조까지의 규정”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0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을 삭제한다.

제95조의4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 “제95조의2 또는 제97조”로 한다.

제209조제3항제7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5호,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⑫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
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를“(계약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을 “제2편제2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제3편제1장”을 “제3편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9조제1항 중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를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로, “제247조 및 제248조”를 “제247조, 제24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249조의2제1항 중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를 “제76조제2항부

터”로,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제2항·제6항은”을 “제248조, 제249조제1항·제2항·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으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및 제6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64호 중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를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⑭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⑮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때”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를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제6항,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8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⑯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⑰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보험업법」의 적용)”을“(「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업법」 제102조·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한다.